

무배당 GOLDEN CHOICE 연금보험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평균수명과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은퇴자금이 필요합니다.

무배당 GOLDEN CHOICE 연금보험

- 공시이율과 복리효과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연금 마련
-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에도 걱정이 없도록 자금 유동성 확보
- 관련 세법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단,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가능)

노후연금

노후행복자금

노후준비

다양한 연금지급 방식

복리효과

추가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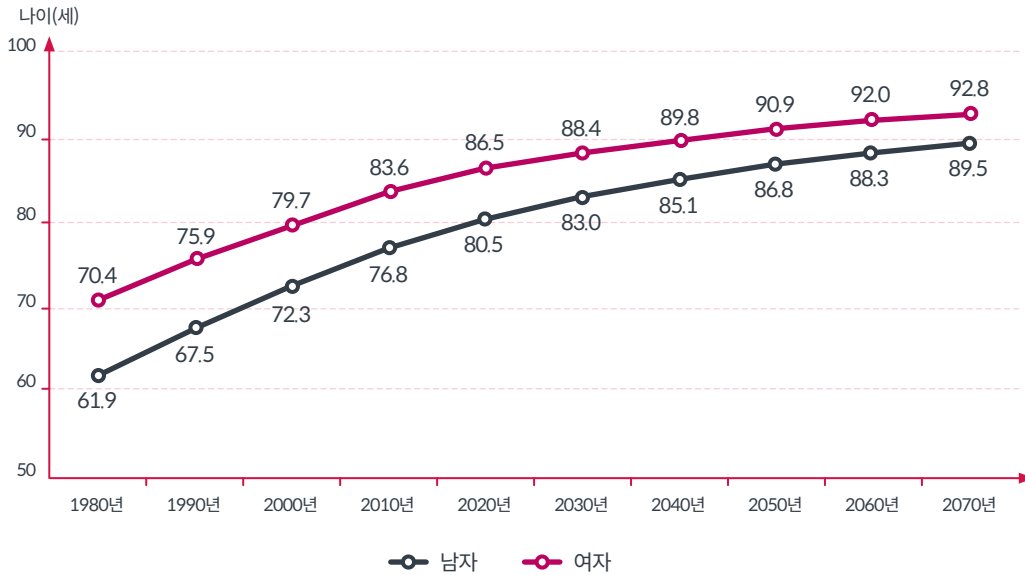
왜 은퇴준비를 해야 하나요?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노인 가구 비중,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대수명 증가로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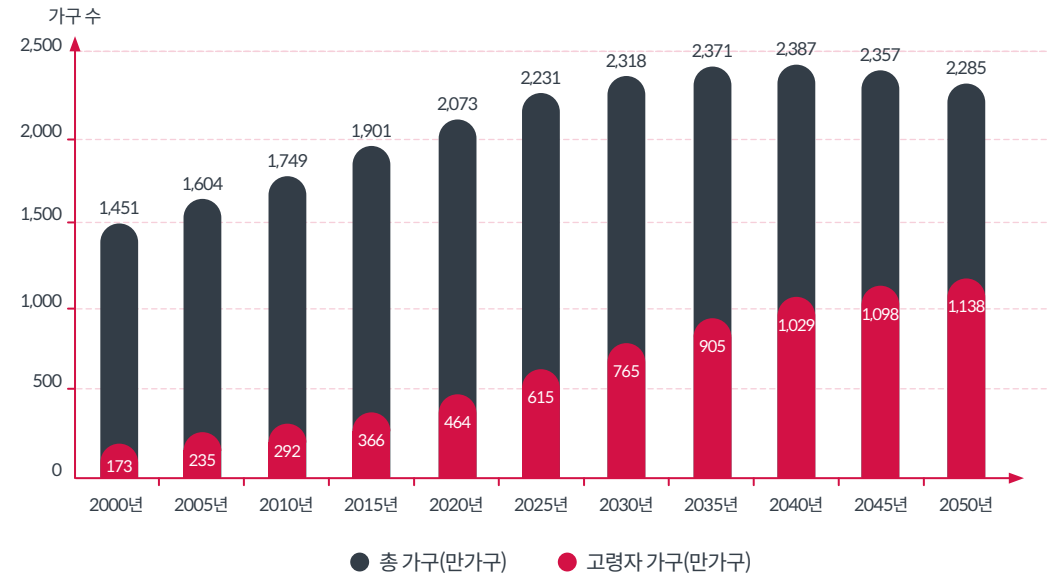
기대 수명



고령자 가구*가 절반이 되는 시기는 불과 약 30년 뒤!

*고령자 가구 : 가구주 만 65세 이상

총 가구와 고령자 가구



[출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2

왜 은퇴준비를 해야 하나요?

100세 시대! 귀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Q. 노후를 위한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별 ¹⁾	2019년 연령별 최소/적정 노후생활비(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기준)
계	194.7	116.6	267.8	164.5
50세 미만	210.4	128.8	283.0	179.6
50대	215.4	129.7	296.1	182.3
60대	199.3	118.4	275.4	167.3
70대	172.4	104.2	235.5	146.7
80세 이상	155.1	91.3	213.5	130.3

※ 1)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최소 노후생활비와 적정 노후생활비임

※ 최소 노후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적정 노후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함.

[출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2021

Q. 본인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1

GOLDEN CHOICE 연금보험,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① 유연한 자금 운용

- 중도인출¹⁾, 추가납입²⁾,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³⁾ 및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 종료제도⁴⁾ 활용 가능

연금 개시 전

- 노후 행복 자금을 설정할 수 있어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활용 가능

연금 개시 후

※ 1) 계약자 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 적립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2) 기본보험료의 최대 200%까지 매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3) 계약자에게 일시적인 자금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료 납입 기간의 50%를 경과한 계약에 대해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 종료 제도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보험료 납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안정적인 노후연금

- 공시이율, 복리효과로 안정적인 노후연금 마련
- 기간에 따라 최저보증이율⁵⁾ 보증

※ 5)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0.5%

③ 비과세 혜택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가능

※ 단,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GOLDEN CHOICE 연금보험,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4 다양한 니즈, 다양한 연금 지급 방법

• 라이프스타일, 건강 상태 등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연금 지급 방법 선택 가능



가입안내

보험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 GOLDEN CHOICE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가입나이(보험나이)(A)	보험료 납입기간(B)	보험료 납입 후 최소거치기간(C)	최소 보험료	연금개시나이(D)
	0세~59세	5년납	13년	30만원	MAX (45, A+B+C)세~80세
	0세~54세	7년납	16년		
		10년납	13년		
		15년납	10년		
	0세~52세	20년납	5년		
0세~(D-27)세	전기납	-			45세~80세

· 보험료 납입 후 최소거치기간 이후에 연금지급개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보험료 : 월납 /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보험료 할인	할인 전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200만원 미만	할인없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0원 + (기본보험료 - 200만원)의 1.5%
	500만원 이상	기본보험료의 1.0%

· 기본보험료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실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보험료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보험기간(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이 있는 보험기간도 포함)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시점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보증금액부), 브릿지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전까지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금지급방법

매월, 매 3개월, 매 6개월, 매년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사유	지급내용
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1.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에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입 당시 만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납입한 보험료상당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상당액'을 지급합니다.
2. '납입한 보험료상당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 선납보험료 중 월 계약해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제외)에서 중도인출 및 자기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은 계약자가 선택하신 기본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지급사유	지급내용
자기관리자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기관리자금지급일에 살아 있을 경우	자기관리자금지급일 직전 일의 '납입한 보험료상당액'의 10% (1회에 한하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만 지급)

1. 자기관리자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관리자금지급일이 연금지급개시일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리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 되지 않은 자기관리자금은 계약자 적립액에 포함하여 연금 지급 계산에 사용됩니다.
2. '자기관리자금지급일'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고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에 의해 연장된 납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3. 자기관리자금의 경우 자기관리자금지급일 이전에 계약자가 지급받지 않을 것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관리자금은 계약자적립액에 포함하여 연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4. 약관에 의해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연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연금 (계약 시 선택가능한 연금)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 : 체증기간 10년
	보증금액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재원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변경 가능한 연금지급형태	브릿지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브릿지기간동안에는 브릿지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20차년도, 또는 100세까지 보증지급) : 브릿지기간(5년~20년)선택, 브릿지비율(110%~500%)선택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또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및 브릿지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즉, “100세 보증형”이란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형입니다.
5.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과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7.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및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및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브릿지기간 및 브릿지비율에 의하여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브릿지비율을 크게 할 경우 브릿지기간 동안 좀더 많은 연금액이 지급되므로 브릿지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 및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11.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12.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이란 계약자의 선택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또한, 연금개시 이후 보험기간 동안에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을 합산하며,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13. (주)12에서 정하는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잔여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의 최종지급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연금의 최종지급일에 남아 있는 잔여‘노후행복자금적립액’을 지급합니다.
14.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선택비율은 0%~49%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전까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적립이율 이 보험의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0.5%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의 예외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납 또는 7년납으로 단축 변경하는 경우
2. 5년납 또는 7년납을 다른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연장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변경 후 납입기간으로 계산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연 12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1회 인출금액은 「인출직전의 '납입보험료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인출
 - 계약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노후행복자금적립액 인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전체를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은 공시이율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10년납, 40세, 연금개시나이 63세, 자기관리자금 미수령시

(단위 : 천원, 천원미만 절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남자						여자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공시이율 (연복리2.14%) 가정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공시이율 (연복리2.14%)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0	61	6.8%	62	6.9%	62	6.9%	61	6.8%	63	7.0%	63	7.0%
6개월	1,800	916	50.9%	922	51.2%	922	51.2%	917	50.9%	923	51.2%	923	51.2%
9개월	2,700	1,774	65.7%	1,786	66.1%	1,786	66.1%	1,775	65.7%	1,787	66.2%	1,787	66.2%
1년	3,600	2,633	73.1%	2,654	73.7%	2,654	73.7%	2,635	73.2%	2,656	73.7%	2,656	73.7%
2년	7,200	6,093	84.6%	6,171	85.7%	6,171	85.7%	6,096	84.6%	6,175	85.7%	6,175	85.7%
3년	10,800	9,585	88.7%	9,762	90.3%	9,762	90.3%	9,591	88.8%	9,768	90.4%	9,768	90.4%
5년	18,000	16,672	92.6%	17,167	95.3%	17,167	95.3%	16,682	92.6%	17,178	95.4%	17,178	95.4%
7년	25,200	23,897	94.8%	24,884	98.7%	24,884	98.7%	23,911	94.8%	24,898	98.8%	24,898	98.8%
10년	36,000	34,944	97.0%	37,021	102.8%	37,021	102.8%	34,964	97.1%	37,042	102.8%	37,042	102.8%
15년	36,000	35,741	99.2%	41,066	114.0%	41,066	114.0%	35,770	99.3%	41,099	114.1%	41,099	114.1%
20년	36,000	36,558	101.5%	45,563	126.5%	45,563	126.5%	36,597	101.6%	45,608	126.6%	45,608	126.6%
23년	36,000	37,056	102.9%	48,497	134.7%	48,497	134.7%	37,099	103.0%	48,549	134.8%	48,549	134.8%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누계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현재(2023년) 평균공시이율 2.25%, 현재(2022년 12월)의 공시이율 2.14%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은 현재(2023년) 평균공시이율 2.25%와 현재(2022년 12월)의 공시이율 2.14% 중 작은이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이후 연복리 0.5% 입니다.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1.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6.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혐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보험료적용이율은 이 보험 상품의 상품설명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9.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세제혜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센터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14.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5.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6.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 부산 : (051) 606-1701

- 대구 : (053) 760-4000

- 광주 : (062) 606-1600

- 대전 : (042) 479-515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전화]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생명보험협회]

- 본부 : (02) 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 2262-6552, 6572, 6573

- 중부지역본부 : (042) 242-7002~4

-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 영남지역본부 : (051) 638-7801~4

-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원주지부 : (033) 761-9672~3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 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